

#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683
----------	------

2020. 09. 08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. 7. 13. 서윤기 의원
2. 회부일자 : 2020. 7. 14.
3. 상정 및 의결일자
  -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(2020. 9. 8. 상정·의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 (서윤기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(안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).

## Ⅲ. 검토보고 요지 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에 따라 실시된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“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” 심의결과 제시된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윤기 의원이 발의하여 ‘20년 7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- 현행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(이하 ‘인권기본조례’)에서는 시민의 인권<sup>1)</sup>과 관련하여 타 조례를 제·개정하는 경우 인권기본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면서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‘인권영향평가’<sup>2)</sup>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(검토보고서 붙임-1 참고).
-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‘20.4.2. “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”(이하 ‘인권위원회’)를 개최하여 인권영향평가 결과 확인된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적 조항에 대하여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개정을 권고하였음<sup>3)</sup>.

---

1) ‘인권’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(인권기본조례 제2조제1호)

2) ‘인권영향평가’란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·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로서, 평가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·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,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가를 의미함

-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(인권위원회, 서울연구원, 변호사 등)의 검토·협의를 거쳐 3개 분야<sup>4)</sup> 9개 항목<sup>5)</sup>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는데, 그 결과 총 96개 조항(조례 57개, 규칙 5개)에서 보완사항이 도출되었고, 이를 토대로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의 개정을 권고하게 되었음<sup>6)</sup>.
- 개정 권고내용 중에는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해제와 관련된 차별적 조항인 「정신상의 장애」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, 이는 ‘장애’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(검토보고서 붙임-2 참고).
-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제2호를 개정하여 ‘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’를 ‘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’ 및 ‘불가피한 개인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’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밖의 특이사항은 없음.
- 참고로, 서윤기 의원은 인권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‘의안번호 164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

3)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.(인권기본조례 제17조제2항)

4) 1. 차별 및 인권침해, 2.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, 3. 시민참여보장

5) 1.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, 2. 편견·선입견에 근거하여 대상을 한정, 3.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, 4.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(상위법에 근거한 시설 이용 감면(면제)의 올바른 적용여부, 5. 반환권 제약(공공시설 이용 사용시 반환조항이 미비한 경우), 6. 구제권 제약(과태료 부과·징수의 법적근거 여부 및 구제절차 포함 여부), 7. 개인정보보호권 보장, 8.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참여권, 9.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

6) 출처: 서울시 보도자료, 2020.4.10.

례안’부터 ‘의안번호 169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이르기까지 총 53개(이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조례는 총 6건임) 개정조례안을 동시에 발의(‘20.7.13.)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바, 향후 위원회 소관조례 제·개정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의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VII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
3. 불가피한 개인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위원의 신분보장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(위원의 신분보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</u></p> <p>3. <u>불가피한 개인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</u></p>